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2194 정직무효확인청구

원 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고 학교법인 [REDACTED] 대학교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강민정

[REDACTED]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REDACTED]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1. 9. 1. 이 사건 대학교의 보육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3. 10. 1. 조교수로, 2007. 10. 1. 부교수로, 2013. 4. 1. 정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이다.

나. 피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8.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9. 3.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정직처분(정직 3월)을 하였다.

1) 채플출석 불량 및 허위기재

-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채플 출석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학교정책을 악용하여 출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횟수의 과다함에 비추어 고의적인 허위문서 작성행위가 인정됨.
- 위와 같은 예배에 대한 경홀한 태도는 진리와 성결이라는 이 사건 대학의 교육이념을 준수하여야 하는 교수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임.



2) 강의성실 불량

- 징계혐의자는 전체 74개 과목의 전체출석률이 52% 정도이며, 이중 출석률 80% 미만인 과목이 66개 과목에 이른다. 교양 현장실습 등 과목의 특수성을 제외한 순수 전공이론 과목 기준 49개 과목의 출석률은 61% 정도이며, 이 중 41개 과목의 출석률이 80% 미만임.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대학 차량출입기록과 학생들의 강의평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충분히 징계사유로 인정됨.
- 징계혐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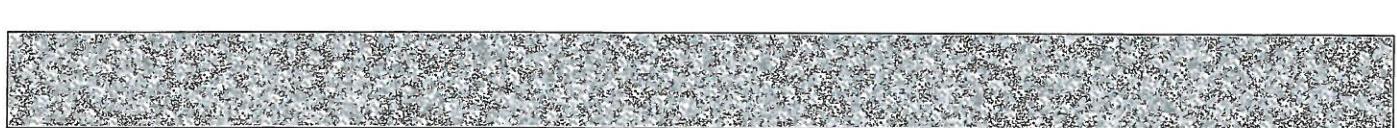
다. 채권자는 2015. 9.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징계사유 중 '1) 채플출석 불량 및 허위기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2015. 12. 23.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제2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취소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당사자들에 대한 이 사건 취소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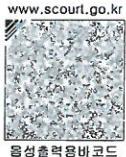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7,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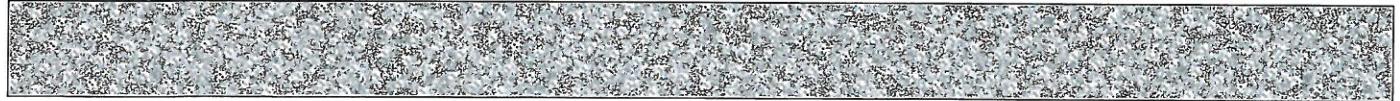
살피건대,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협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 정직처분 등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취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점(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교원지위특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당사자들의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지나 그 취소의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현실적인 정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 사건 취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피고가 불응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취소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임금 및 위자료 청구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정직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





법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위 2010다88880 판결은 학교법인이 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이 파면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투면서 임금 등 지급을 거절하고 짜증계자를 학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학교법인은 정직 기간 이후의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금 및 위자료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률	<u>최병률</u>	
판사		김병훈	<u>김병훈</u>	
판사		이승연	<u>이승연</u>	



정본입니다.

2016.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주사보 박지선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
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